『장애인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2015.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 례

T. 조사개요 ······	1
1. 통 계 명	1
2. 법적근거	1
3. 조사방법	1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1
5. 조사 및 공표주기 ····································	1
6. 통계과정 개관	1
7. 조사연혁	2
Ⅱ. 통계의 작성목적, 이용 및 이용자	3
1. 통계의 작성목적	3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4
m > 기 원 -에	_
Ⅲ. 조사설계 ····································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2. 모집단 및 표본틀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16
Ⅳ. 자료수집 ····································	7
1. 조사방법	
2. 조사원	
3. 조사 실시1	19
V. 자료처리 ····································	<u>2</u> 0
1. 자료코딩	
2. 자료입력	
3. 무응답	20
VI. 통계추정 및 분석2)1
VI. 8/개 + 6 옷 한 기 1. 통계추정 ····································	
1. 공세구성	
2. 北日上小 〒78 8日 夫 包竹(五七二八) ····································	2 3
VII.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u>2</u> 4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2	<u>'</u> 4
2.	시의성 및 정시성····································	:6
3.	업근성 및 명료성 ······· 2	:6
4.	아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7
VⅢ.	F계기반 및 개선 ·······2	8
1.	사료처리 시스템	9
IX.	}고문헌 ····································	9
	 기타 무헌	

I. 조사개요

1. 통계명

장애인실태조사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3. 조사방법

○ 조사원이 전국 38,560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 조사 및 공표주기

○ 3년 / 3년

6. 통계과정 개관

□ 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업무별	일정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표 개발	5월~7월
조사 지침 작성	7월~8월
표본 설계	7월
조사 실시에 대한 홍보	8월~10월
조사원 모집 및 교육	8월~9월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8.29~10.31
조사표 검토 및 에디팅	9월~11월
조사자료 전산입력	11월
사후점검 조사 실시	11월
입력자료 재검토 및 내검	11월~12월초
분석프로그램 작성, 승수 계산(가중치 작업)	12월
통계처리·분석 및 자료 공표, 보고서 작성	12월 ~2015.4월

7. 조사연혁

□ 최초 개발 시기

- 1989년 『장애인복지법』개정시 장애인실태조사 실시 내용 포함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 실태조사는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8조(1990.12.1.))
- 법 내용을 기반으로 1990년 장애인실태조사 실시

□ 개발배경

- 인구의 노령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약물남용, 환경문제, 난치성 질환 등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의 다양화에 따라 장애인구는 증가 경 향이 있으나, 장애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전무한 상태임.
-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며, 경제, 보건·의료, 사회적 측면에서 낮은 처우를 받아 왔으나 장애인의 복지지원상황 및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함.
- 장애 인구 규모에 대한 추정, 장애발생원인 및 발생시기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장애인 발생억제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장애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복지증진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이 필요함.

Ⅱ. 통계의 작성목적, 이용 및 이용자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의 작성 목적

○ 장애인 실태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인의 복지욕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 있음.

○ 장애인실태조사 필요성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출현율' 통계지표를 생산하는 조사이며, 전국 장애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등 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산 및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실태를 제시함.

-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 장애출현율, 전국 장애인 수,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파악
 - 장애출현율 파악, 장애인수 추정을 통한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현황 및 향후 욕구에 대한 자료 확보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서의 복지지원 현황 및 향후 욕구에 대한 자료 확보
 -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관리 실태 등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근거에 기반을 둔 장애예방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 : 장애유형별 추이,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
 -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추이, 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대한 관한 기초 자료 확보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 : 장애인의 사회참여 현황, 취업 실태와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자료 제시
 - 장애인의 사회참여 현황, 취업 및 실업율 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모색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등 자료 제시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자립 수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등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사회·문화적 지원 정책의 모색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 장애인의 차별 경험 및 대

- 응 실태, 폭력 경험, 일상생활 만족도 등의 파악을 통해 삶의 질 수준 진단
-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폭력 및 차별 경험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자료 확 보 등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시 실태조사내용
 -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 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 황에 관한 사항
 -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 상황에 관한 사항
 -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등 최근의 장애인 정책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사항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보건복지부) 장애 출현율, 장애인 등록율, 장애발생원인, 복지서비스 이용 및 욕구 파악, 장애추가비용, 건강검진 수진율, 만성질환 유병율, 장애아동 보육 현황,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현황 등
- (교육부) 장애인 교육수준, 특수교육 이용율
- (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률
-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현황 등
- (국토해양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상황 등
-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에서의 장애유형별 출현율, 발생원인, 특성 등

Ⅲ. 조사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 항목

□ 조사 항목 체계

가.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을 파악하며, 가구원의 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장애등록여부, 장애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록연도, 등록 장애유형, 장애등급이 있음.
- 가구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가구원수, 가구내 장애인 수, 가구유형, 월평균 가구소 득, 주된 수입원, 월평균 가구지출액, 주택형태 등 소득 및 지출 수준, 가구규모, 세대 구성, 주거형태 등이 있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지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이 포함됨.
- 장애범주
- 법정장애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 애, 간질장애(15개 유형)
- 향후 확대예정 장애범주 : 만성알콜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

나. 장애인 심층조사표

○ 장애특성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5개의 법정 장애유형별로 조사문항을 구성함.
- 15개 장애유형 모두 해당 장애의 유무, 최초 장애발견시기, 장애의 주된 원인이 공통적 인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마비 정도, 동반장애 유무,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장소, 출산방법)
-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및 점자해독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 인
-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여부, 인공와우수술 여부, 수화가능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수화가능 여부, 주된 의사소통방법, 최초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⑥ 지적장애: 지적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의사소통 수행능력 정도, 주된 장애원인
- ⑦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여부, 지적장애 및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의사소통 수행능력 정도, 주된 장애원인
-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주된 진단명
-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및 투석시작시기, 신장이식 여부 및 이식 연령, 주된 장애원인
- ①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심장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 인
- ①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산소치료처방 가정사용 여부, 인공호 흡기 사용 여부, 주된 장애원인
- ② 간장애: 간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간이식 여부 및 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 ③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A)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⑤ 뇌전증(간질)장애: 간질장애 여부, 최초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장애 공통사항

- 장애 공통사항의 조사항목은 크게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 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로 구성됨.
- ① 보건의료·건강: 주된 장애유형, 건강보험 가업여부 및 형태, 치료·재활·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진료받는지 여부, 진료받는 장소, 진료받지 않는 이유,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여부 및 건강검진을 안받은 경우 이유, 암검진 여부,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 여부, 입원 경험 여부, 최근 2주간 병의원·보건소·한의원에서의 치료경험 여부, 최근 1년간 사고나 중독발생 여부, 최근 1료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최근 이용 병의원 의료진의 장애 이해도, 만성질환 유무, 난치성 질환 여부 및 등록, 최근 1년간 병의원 가지 못한 경험 및 미치료 이유, 치과진료 받지 못한 경험 및 미치료 이유,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유형, 이용 여부 및 시간, 월 자부담 비용, 바우처 여부 및 재원인지 여부, 재활치료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향후 필요한 보건의료기관 및 서비스, 흡연 및 음주 현황, 최근 1년간 건강관리 위한 운동현황, 최근 1년간 키나 몸무게 측정여부, 평소 스트레스정도,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여부, 자실 시도 여부, 건강관련서비스 경험 여부, 건강관련 정보 획득처, 운동관련 정보 획득처, 향후 건강향상 위한 필요 서비스
- ② 일상생활지원: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수단적 일상생

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장애특성 및 사회환경 고려 영역,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유무, 주보호자, 주보호자와의 동거 여부 및 계속적인 도움필요 여부, 현재 도움의 충분정도, 일상생활 도와줄 외부인 고용의향

- ③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별 필요 및 소지 여부, 필요 보조기구의 미구입주된 이유,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여부, 보조기구 지원받은 곳, 지원받은 형태, 지원수준의 만족도, 보조기구의 확보 경로, 보조기구 활용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보조기구 사용 만족도, 보조기구 급여지원사업에서의 개선사항,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및 사용하지 않는 이유
- ④ 교육: 교육수준, 학교형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경우 그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월비용,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 유치원 이용시간 및 월비용, 유치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학교생활 적응정도, 학교생활(보육·유치원 포함)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통학방법, 방과후 교육(보육)형태,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민간개인연금상품 가입의향,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및 이용프로그램 수, 지난 1년간 자기부담금액, 향후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 ⑤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의 경우) 지난 1주간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월평균수입, 직장 내 지위, 직장생활시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실업자의 경우) 지난주 근로가능여부, 구직방법 및 공공 직업알선기관 등록, 원하는 고용형태, 희망하는 일자리(직장) 사업 및 업무내용, (비경활) 지난 4주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실업자 및 비경활)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공통)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여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장애인의 직업재활 내용
- ⑥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단독 외출 가능 여부, 지난 1개월동안 외출 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및 어려운 경우 주된 이유, 지난 1주간 문화여가활동 내용,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및 만족하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지난 1년간 예술행사 관람여부 및 관람횟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 획득처, 문화예술 관람시 중요 기준,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어려운 점, 선거투표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
- ⑦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및 형태, 결혼 연령, 결혼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장애여부, 배우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 본인 및 배우자 출생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유형·장애등급·연령,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발달지장 여부, 장애로 인한 자녀양육·교육시 어려운점, 이혼경험 있는 경우 이혼 사유,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

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유산경험 여부 및 유산의 주된 이유, (출산경험 있는 경우)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여부 및 시기, 출산방법,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 대상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여성장애인으로서 어려웠던 점

- ⑧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현재 생활 만족도,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및 주된 상담자,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한 무시·폭력 경험 여부 및 받은 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가족원,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여부 및 시기,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가해자 유형, 성희롱·성추행·성폭력시 대처행동, 성희롱·성추행·성폭력시 주 상담자, 상담하지 않은 이유,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상담시설 필요 정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여부(생애주기별), 본인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장애인가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정도
- ⑨ 주거: 현재 주거 위치, 소유형태 및 주거 가격, 현 주거지의 소유주,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지난 1년간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만족도, 집구조의 편리 정도, 장애로 인한 집구조의 개조의향 및 개조 희망 영역, 향후 희망 주거유형 및 형태
- ① 복지서비스: 장애등록 여부, 장애등록한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 등록연도, 등록후 국가 나 사회의 서비스 지원 정도,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및 사유, 재심사 후 등급 조정 여부, 장애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이용경험 여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이용경험·이용희망, 복지관련 정보 획득처,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 ① 경제상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속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 여부 및 형태, 가구 및 개인의 지난 1개월간 월평균 수입원 및 수입액, 연금가입현황, 차량 소유 여부 (차종, 연료사용, 자동차 소유현황, 장애인자동차 표지종류, 용도, 운전자), 한 달 동안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기타)

1-2 적용 분류체계

- □ 본 조사에서 장애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5개 장애유형 분류체계를 따름.
 -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 『장애인복지법』에서의 15개 장애 종류
-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총 15종류의 장애임.

⟨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예상 장애범주	
		지체장애			
	외부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신체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기능의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신체적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	
	21.14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성통증, 기타 암	
	내부 기관의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71관의 장애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0 -11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적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0 4 0 1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자폐성장애		소아자페 등 자폐성 장애	기타 정신발달장애	

(1) 지체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014년 6월 30일 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포함대상은 다음 과 같음.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014년 6월 30일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임.

(3) 시각장애

- 시각장애란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

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각장애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

-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됨.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청각장애이고, 아래의 항목들 중 '라'항목이 평형기능장애에 해당됨.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

-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 생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 음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함.

(6) 지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음.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함.

(7) 자폐성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판정을 받게 됨.

(8) 정신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① 정신분열증: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 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 지장애 등이 나타남.
- ②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 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 ③ 반복성 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 ④ 분열형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임.

(9) 신장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 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10) 심장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이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11) 호흡기장애

- 호흡기장애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 정되어 있음.

(12) 간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함. 그리고 간이식을 시술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됨.

(13) 안면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됨.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함.

(14) 장루·요루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15) 뇌전증(간질)장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간질장애에서 뇌전증장애로 장애명칭이 변경됨. 시행령에서는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장애판단 기준

장애유형	기준
지체장애	가구원 중 팔, 다리, 몸통에 마비, 절단, 변형이나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 등으로 일 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절단, 변형된 경우는 지속된 기간과 관계없으며, 마비,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임)
뇌병변장애	가구원 증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해 보행이나 섬세 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 있습니까?
시각장애	가구원 중 두 눈의 시력이 나빠 안경을 끼고서도 잘 안보이는 사람(교정시력 0.2 이하 정도)이나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이 있습니까? / 가구원 중 두 눈의 시야가 좁아서(두 눈의 시야가 각기 10 °이내 또는 두 눈에 의한 시야의 1/2 이상 상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각장애	가구원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거나(인공와우 포함)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가구원 중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멈추지 않고 10m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어장애	가구원 중 말을 잘 못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음성이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적장애	가구원 중 자기나이에 비해 지적발달이 늦거나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 습니까?
자폐성장애	가구원 중 말이 늦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며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장애	가구원 중 정신질환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장장애	가구원 중 신장기능이 나빠 한 달 이상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장애	가구원 중 심장(심장이식 포함)이 나빠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기장애	가구원 중 폐나 기관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장애	가구원 중 간경변, 간암 등 만성적 간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면장애	가구원 중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 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루요루장애	가구원 중 1년 이상 지속된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뇌전증장애	가구원 중 만성적인 뇌전증(간질) 등 경련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의 정의

- 장애인 기준
 -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 정의에 따름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미 등록이나 장애상태에 있는 경우 포함

□ 조사모집단의 정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 기숙사, 특수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 제외
-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출현율을 파악하고자 함

□ 모집단과 조사 모집단의 차이

- 표본추출틀로 사용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장애인 가구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모집단과 목표모집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사 모집단 자료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이러한 장애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표본 설계에서는 반영할 수 없으며, 조사 모집단과 목표 모집단 간에 가구와 개 인으로 추정의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존재함
- 그러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는 서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인 지역별 장애 인 분포를 이용하여 이를 표본배분 단계에서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음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

○ 통계명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기숙사, 특수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 제외

○ 작성기관 : 통계청○ 작성연도 : 2010년

□ 표본추출틀로 선정한 이유

- '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특성까지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추출들을 제공하기 위해 90% 전수조사와 10% 표본조사로 실시
- '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조사구 단위로 집계하여 추출틀로 제공하는데, 이에는 조사구특성, 가구특성(가구원수, 주택유형 등), 인구특성(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
- '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틀은 통계청이 보유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 크로데이터 사용신청(무상 or 유상)으로 가능

□ 표본추출틀 갱신 과정, 내용, 주기 등

- 주관기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 일반조사구 : 시 ·도 \Leftrightarrow 시 · 군 · 구 \Leftrightarrow 읍 · 면 · 동(총관리자) \Leftrightarrow 조사관리자 \Leftrightarrow 조사 원
-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 · 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 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
- 준비조사
- 전수조사구 : 2010. 10. 19. ~ 10. 21.(3일간)
- 표본조사구 : 2010. 10. 19. ~ 10. 21.(기간중 2일간)
- 본조사 : 2010.11.1. ~ 11.15.(15일간)
- * 인터넷조사 : 2010. 10. 22.~10. 31.(10일간)
- 내용 : 인구, 가구, 주택, 인구이동, 주거실태 등
- 주기 : 5년(2010년에 실시한 인구총조사는 제18차, 주택총조사는 제10차에 해당)
- □ 모집단 변동에 따른 표본추출틀을 주기적으로 개편하는 경우 개편의 주기, 필요성, 방법 및 절차, 결과
- 장애인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최근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5년~6년 정도의 주기로 표본추출틀이 개편된다고 할 수 있음
- 개편의 필요성은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조사구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방법 및 절 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짐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표본설계방법 및 과정

- 추정의 효율을 높이고 세부 통계의 생산을 위해서 층화(stratification)추출방법 적용
- 2014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의 표본추출 부분 <표 2> 참고

〈표 2〉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본규모

(단위: 가구,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1년	2014년
표본가구				
추정가구 수(A)	14,677,637	15,864,809	17,574,018	18,206,328
표본가구 수(B)	39,411	40,556	38,231	38,560
B/A(%)	0.27	0.26	0,22	0.21
표본인구				
전체인구(C)	46,853,554	46,727,073	47,708,423	50,219,669
표본인구(D)	123,721	119,306	105,496	104,703
D/C(%)	0.26	0.26	0.22	0.21

주: 2000년~2011년도 자료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자료를 참고하였으며, 2014년도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 KOSIS)를 기준으로 하였음

Ⅳ.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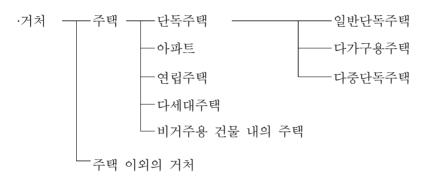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조사원의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조사원 운영

□ 조사과정

- 1) 조사구 관할 주민센터(동·읍·면사무소) 방문
- 2) 통이장 및 반장 방문
- 3) 조사구 경계선 확인
- 4) 조사구요도의 수정·보완
- 5) 조사구의 분할
- 6) 가구의 확인



7) 가구명부 작성 및 확인

□ 현장조사 실시 요령

○ 장애인실태조사는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이며, 이 조사의 내용이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법(통계법 제33조, 제34조)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조사원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조사원 채용방법 및 과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조사원 카페, 주부모니터를 통해 채용공고(수시채용)→ 조사원 모집 → 면접 →채용 → 희망지역 고려하여 배정

□ 조사원 자격요건

- 자격 : 만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조사 참여 유경험자 우대

2-2 조사원 교육훈련

□ 조사원(조사관리자 포함) 교육훈련

- 교육 방법 : 조사지도원, 조사원에 대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현지조사 실시요령, 조사항목별 내용 및 주의사항 설명, 조사원확인사항 점검, 개인정보관련 교육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조사원 설명회
- 1) 1차 투입
 - 일시: 2014. 8. 25(월)~28(목) 09:00~18:00
 - 장소: 8월25일(월) 환경정책연구원 대강당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8월26일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 2차 투입

- 일시: 2014. 9. 15(월)~17(수) 09:00~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 조사업무 흐름도

업무별	일정
조사계획 수립	4월
조사표 개발	5월 ~ 7월
조사원 모집 및 교육	8월 ~ 9월
조사 홍보 및 협조요청	8월 ~ 10월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8월 ~ 10월
조사표 검토 및 에디팅	9월 ~ 10월
조사자료 전산입력	11월
입력자료 재검토 및 내검	11월 ~ 12월 초
사후점검조사 실시	11월
가중치 작업	12월 초
통계 처리 및 분석 및 보고서(가제본) 제출	12월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준비 사항

- 조사홍보
 - 안내문, 포스터 제작·배포 : 조사 대상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안내 포스터 배포 및 부 착 요청
- 조사대상 및 답례품 확정
- 조사구 요도
- 설문지, 설명회자료 등 인쇄
- 조사원 개인 준비물 점검

3-4 현장조사 관리

□ 현장조사 관리 체계 및 방법

○ 조사지도원은 조사팀의 팀장으로 현장조사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관리하고 조사수행을 지도감독

□ 조사관리자의 1인당 조사원 수 및 역할

- 조사지도원의 역할
 - 조사원이 조사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Ⅴ. 자료처리

1. 자료코딩

-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부호화 지침서
 - 연구원에서 제공한 부호화지침서에 따라 엑셀에 조사결과 자료를 부호화(코딩)함.
 - 비해당 : 0
 - 무응답 : 9 (99)
 - 보기 문항 중 체크한 문항 번호 기입

2. 자료입력

-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 기간 : 2014. 11. 6. ~ 2014. 11. 22.

3. 무응답

□ 단위 무응답률

〈표 1〉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현황

	조사지역수	대상가구수	완료가구수	완료율	조사완료 가구원수	조사장애인수
2014년도	200지역	48,344가구	38,560가구	79.8%	104,703명 (2.72명 /가구)	6,824명

Ⅵ. 통계추정 및 분석

1. 통계추정

1-1 가중치 조정

- □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본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산정됨
 - 설계 가중치의 방법
 -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 추출법으로 추출

L : 층의 수

 N_h : 층 h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 층 h 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r_{hi} : 층 h의 i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 무응답 조정

-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 최초 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 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 사후층화
-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
-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가구가중치는 16개 지역(동, 읍·면 고려), 가구원수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청 2013년 가구 추계값으로 사후 조정함
- 최종 가중치 산술식은 다음과 같음

최종 가중치 = 설계 가중치 × 무응답 조정 가중치 × 사후층화 가중치

○ 층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가구 가중치								
	비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	가구 수							
서울	3,092,952	473,979	3,566,931							
대도시(서울제외)	3,987,612	684,057	4,671,669							
중소도시	5,675,851	951,801	6,627,652							
농어촌	2,615,634	724,442	3,340,076							
계	15,372,049	2,834,279	18,206,328							

- 각 충별로 장애인 가구 출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13.29%, 대도시(서울제외)는 14.64%, 중소도시의 동부는 14.36%, 농어촌은 21.69%로, 농어촌의 장애인 출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국적으로는 15.57%로 추정됨

1-2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총합 추정 산식

○ 전체 가구의 평균 산출

$$\hat{Y}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 \sum \sum \sum w_{hij}$$

 w_{hij} :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응답결과

L: 층의 수

 n_h : 층 h에서의 표본 조사구의 수

 m_{hi} : 층 h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2.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 방법

○ 추정량의 분산

$$var(\hat{\overline{Y}}) = \sum_{h=1}^{L} \frac{n_h (1 - f_h)}{n_h - 1} \sum_{i=1}^{n_h} (e_{hi.} - \overline{e_{h..}})^2$$

L: 층의 수

 n_h : 층 h에서의 조사구 수, m_{hi} 는 층 h내 i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N_h$

$$\begin{split}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overline{y})\right) / w_{...} \\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right) / n_h \end{split}$$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오차한계

 $s.e(\overline{y}) = \sqrt{var(\overline{y})}$: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rse(\overline{y}) = \frac{s.e(\overline{y})}{\overline{y}} \times 100(\%)$$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오차의 한계 $=1.96 imes\sqrt{var(\overline{y})}$: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Ⅷ.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되는 내용 및 주요 분류 수준

-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 / 장애유형별 장애등록률 / 장애유형별 후천적 장애발생률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 주관적 건강인식 및 만성질환 보유율 / 장애유형별 흡연 및 음주 등 건강행태 / 생활만족도 / 장애인 차별인식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 수준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율, 고용율 / 장애인의 복지 욕구 / 장애아동, 여성 등에 대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율 /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율 및 이용 희망율 /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에 대한 지원 인식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5개 장애유형별 공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성별 공표 (장애 출현율 등)

□ 주요 통계표, 그래프 등

○ 출현율

【 전국 장애인 추정수 및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14년	장애인수	2,646,064	80,846	2,726,910		
2014년	출현율	5.43	_	5.59		
- 2011년	장애인수	2,611,126	72,351	2,683,477		
2011년	출현율	5.47	_	5.61		
2005년	장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4.50	_	4.59		

○ 장애등록율

【 장애인 추정수 및 장애등록률 】

(단위: 명, %)

			2011년			2014년		
	구분		추정수	등록율3)	등록 장애인수 ²⁾	추정수	등록율 ³⁾	
계		2,517,312	2,683,477	93.8	2,501,112	2,726,910	91.7	
	지체장애	1,337,722	1,338,554	99.9	1,309,285	1,353,753	96.7	
	뇌병변장애	261,746	333,798	78.4	253,493	308,100	82.3	
	시각장애	249,259	259,986	95.9	253,095	278,172	91.0	
	청각장애	260,403	281,878	92.4	255,399	281,983	90.6	
	언어장애	17,207	21,277	80.9	17,830	21,700	82.2	
	지적장애	161,249	176,110	91.6	178,866	207,703	86.1	
주된	자폐성장애	14,888	16,916	88.0	18,133	19,868	91.3	
장애 유형별 장애	정신장애	95,821	115,151	83.2	95,675	117,428	81.5	
기 6월 6기 인수	신장장애	57,142	58,702	97.3	66,551	72,132	92.3	
	심장장애	12,864	18,573	69.3	6,928	8,499	81.5	
	호흡기장애	15,551	19,316	80.5	13,150	16,055	81.9	
	간장애	7,920	9,292	85.2	9,194	11,842	77.6	
	안면장애	2,696	2,434	110.8	2,696	3,019	89.3	
	징루요루장애	13,072	16,790	77.9	13,546	16,815	80.6	
	뇌전증(간질)장애	9,772	14,701	66.5	7,271	9,841	73.9	

자료: 1) 2010년 4/4분기 현재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 2) 2013년 4/4분기 현재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 3) 등록율 = (등록장애인수 / 장애인실태조사 추정 장애인수) × 100

○ 장애 원인

【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 원인	1.2	1.8	5.1	8.4	11.7	29.8	19.8	2.2	0.4	9.4	1.7	2.6	29.2	0.0	5.4	4.7
출산시 원인	0.1	3.1	0.6	1.4	0.6	8.7	4.6	0.4	0.0	0.0	0.0	0.0	0.0	0.0	0.0	1.3
후천적 질환	48.5	83.7	51.8	71.7	49.8	14.3	15.5	83.6	98.4	86.4	96.1	97.4	15.5	96.1	50.5	56.2
원인 사고	49.6	11.0	37.2	11.4	13.4	9.5	0.0	10.4	0.0	4.2	2.1	0.0	55.3	3.9	26.0	32.7
원인불명	0.7	0.3	5.3	7.2	24.6	37.6	60.1	3.3	1.2	0.0	0.0	0.0	0.0	0.0	18.1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의 연령분포

【 장애인의 연령분포 】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간질) 장애	전체
만 0-17세	0.3	3.9	1.3	1.6	8.3	19.1	53.3	0.6	0.0	5.4	0.0	0.0	15.0	0.0	9.4	2.7
만 18-29세	1.1	2.8	2.2	2.2	0.0	31.1	46.7	5.2	0.0	0.0	0.0	0.0	16.4	0.0	8.4	4.1
만 30-39세	5.5	5.6	6.0	4.0	23.9	18.3	0.0	12.6	9.3	5.4	2.1	2.6	3.0	1.3	6.8	6.7
만 40-49세	12.7	7.9	13.4	7.5	11.9	12.6	0.0	36.0	16.3	10.2	0.6	9.5	18.3	2.4	21.6	12.5
만 50-64세	35.1	27.5	28.6	21.8	26.4	14.9	0.0	39.2	37.1	21.9	17.2	71.4	36.0	34.4	32.4	30.7
만 65세이상	45.3	52.5	48.5	63.0	29.5	4.1	0.0	6.2	37.3	57.1	80.1	16.6	11.4	61.9	21.5	4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공표되는 통계의 이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실태조사 통계는 법정 조사로는 1990년부터 생산되어, 현재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통계의 이용이 가능함. (2008년부터 『장애인복지법』개정에 의해 3년 주기로 실시)
- 본 조사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함.

2. 시의성 및 정시성

□ 사전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일정

- 공표 : 2015년 4월 20일
 - 보도자료 공표 시점 : 2015년 4월 20일 (월), 조간
 - 보고서 발간일 : 2015년 6월
 - KOSIS 서비스 : 2015년 7월
- 공개 방법
 - 보고서 파일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현황/통계
 - 국가통계포털 > 보건사회복지 >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4년 (장애출현율, 재가장애인수,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3. 접근성 및 명료성

3-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 이용자서비스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계DB, 표 (예정)
 - http://www.kosis.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 http://www.mw.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데이터포털 : 원데이터 공개 (2015.07.)
 - http://data.kihasa.re.kr

3-2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통계설명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데이터포털 > 주제별 > 인구/가구 > 생애주기 > 장애인

4.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요구 및 제공 방법

- 요구 방법 : 보건복지데이터 포털(http://hawelsis.kihasa.re.kr)에서 요구
- 제공 방법(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
- 자료 신청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자료신청서(협조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게시판에 자료 요구
- 신청서 검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정보연구실 데이터연계센터에서 이용자가 제출 한 자료 신청서 검토
- 입금 대기 : 자료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이용료 입금 요청
- 자료 송부 : 이용료 입금 확인후 이용자 e-mail에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

- 소요 시간 : 요구 자료에 따라 다름
- 내부결재(신청서 접수 및 검토) 3~4일 소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이용자 입금이 늦어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7일 이내 제공
- 소요비용 : 요구 자료 용량 따라 다름
-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제공자료 : 코딩북 내용과 동일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 규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규정(조사자료 처리 및 관리지침 제8조)
- ※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hawelsis.kihasa.re.kr)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정책에서 이용 가능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자료처리 시스템

- □ 통계분석 패키지
- SPSS 21v
- O sas 9.3
- stata 11

Ⅸ. 참고문헌

1. 기타 문헌

□ 관련 문헌

- 변용찬 외,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변용찬 외,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김성희 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